

신구조문 대비표

에이피자산운용(주)

정관

2021. 3. 30. 제정
2021. 4. 28. 개정
2021. 10. 18. 개정
2022 .04.15 개정
2022.08.26 개정
2022.09.05 개정

현행	개정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상 호) <개정 2021. 10. 18.></p> <p>회사의 상호는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영어로는 “AP Capital Korea Limited.”라 한다.</p> <p>제 2 조 (목 적) <개정 2022.08.26></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9 조 제 28 항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3 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3.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 제 40 조 및 제 41 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업무 4.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5.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의한 투자자문업 6.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의한 투자일임업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14 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상 호) <개정 2021. 10. 18.></p> <p>회사의 상호는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영어로는 “AP Capital Korea Limited.”라 한다.</p> <p>제 2 조 (목 적) <개정 2022.08.26></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9 조 제 28 항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3 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3.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 제 40 조 및 제 41 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업무 4.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5.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의한 투자자문업 6.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의한 투자일임업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14 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p>제 3 조 (본점 소재지)</p> <p>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기타 영업소를 둘 수 있다.</p> <p>제 4 조 (공고방법)</p> <p>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주 식</p> <p>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삼백만(3,000,000)주로 한다.</p> <p>제 6 조 (1 주의 금액)</p> <p>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p> <p>제 7 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육만(260,000)주로 한다.</p> <p>제 8 조 (주식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제 9 조 (주권의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주권의 9 종으로 한다.</p>	<p>8.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p> <p>제 3 조 (본점 소재지)</p> <p>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기타 영업소를 둘 수 있다.</p> <p>제 4 조 (공고방법)</p> <p>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주 식</p> <p>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삼백만(3,000,000)주로 한다.</p> <p>제 6 조 (1 주의 금액)</p> <p>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p> <p>제 7 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육만(260,000)주로 한다.</p> <p>제 8 조 (주식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제 9 조 (주권의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주권의 9 종으로 한다.</p>
--	--

② 주주가 제 1 항에 기재된 주식수와 다른 주식수를 표시한 주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의 비용으로 그에 따라 적정한 단위의 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각 주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본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 10 조 (주권 불소지)

① 주주가 자신의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의한 신고시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폐기하여 무효화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조치 후 주권의 불소지를 원하는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2.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3. 주권 불소지의 취지가 주주명부 및 그 복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⑤ 상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불소지하는 주주가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

② 주주가 제 1 항에 기재된 주식수와 다른 주식수를 표시한 주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의 비용으로 그에 따라 적정한 단위의 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각 주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본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 10 조 (주권 불소지)

① 주주가 자신의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의한 신고시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폐기하여 무효화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조치 후 주권의 불소지를 원하는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2.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3. 주권 불소지의 취지가 주주명부 및 그 복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⑤ 상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불소지하는 주주가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확인 후 지체 없이 해

는 주주명부 확인 후 지체 없이 해당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당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금 납입의 지체)

제 11 조 (주금 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위약벌로서 주식을 인수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위약벌로서 주식을 인수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 12 조 (주식양도의 제한) <신설 2022.09.05>

- ①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다.
- ②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수 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 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위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것으로 본다.

제 12 조 (주식의 양도 및 주권의 명의개서)

제 13 조 (주권의 명의개서)

-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합병, 재판의 집행 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합병, 재판의 집행 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납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9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4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 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제 14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9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5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 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을 관독할 수 없거나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오손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발행 절차에 관하여 제 2 항을 준용한다.
- ②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와 분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받은 주주는 회사가 그러한 주권의 재발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수수료)

회사는 주식명의개서 업무를 무료로 취급하되,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와 주권의 재발행 등에 관한 수수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의 신고)

- ①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회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을 관독할 수 없거나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오손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발행 절차에 관하여 제 2 항을 준용한다.
- ②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와 분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받은 주주는 회사가 그러한 주권의 재발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회사는 주식명의개서 업무를 무료로 취급하되,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와 주권의 재발행 등에 관한 수수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9 조 (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의 신고)

- ①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회사가

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전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 각항의 신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주주명부의 폐쇄)

- ①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그 기간은 삼(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이를 공고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제 1 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전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 각항의 신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주주명부의 폐쇄)

- ①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그 기간은 삼(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이를 공고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제 1 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20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권면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전체 권면가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

제 21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권면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전체 권면가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

<p>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주권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주권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주 주 총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주 주 총 회</p>
<p>제 22 조 (종류)</p>	<p>제 23 조 (종류)</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p>
<p>제 23 조 (소집)</p>	<p>제 24 조 (소집)</p>
<p>①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전</p>	<p>①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p>

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
의 3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주주총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
은 청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의장을 호선한다.
이사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제 25 조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4 분의 3 이상의 찬성(이 경우
찬성한 수가 동시에 그 당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과반
수 이상이어야 함. 이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그 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의장을 호선한다.
이사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주
주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제 26 조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
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4 분의 3 이상의 찬성(이 경우
찬성한 수가 동시에 그 당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과반
수 이상이어야 함. 이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그 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p>3. 회사의 청산, 해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p> <p>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p> <p>5. 회사의 담보제공 및 보증. 단, 건설자금차입계약 및 일상적인 영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p> <p>6.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 또는 증권거래소에의 상장</p> <p>7.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p> <p>8.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주주 또는 이사에 대한 금전 지급</p> <p>9. 회사의 자본 감소</p> <p>1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p> <p>③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 26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p> <p>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3. 회사의 청산, 해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p> <p>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p> <p>5. 회사의 담보제공 및 보증. 단, 건설자금차입계약 및 일상적인 영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p> <p>6.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 또는 증권거래소에의 상장</p> <p>7.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p> <p>8.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주주 또는 이사에 대한 금전 지급</p> <p>9. 회사의 자본 감소</p> <p>1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p> <p>③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 27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p> <p>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하되 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제 30 조 (이사의 수와 임기)

- ①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등)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감사의 선임 및 임기)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1 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하되 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제 31 조 (이사의 수와 임기)

- ①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 (이사의 선임 등)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감사의 선임 및 임기)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1 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3 조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4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의 불참 시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전에 대표이사를 대신할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와 각 주주에게 이사회의 소집 일시,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의 불참 시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전에 대표이사를 대신할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

장소 및 의안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주주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이사회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각 주주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 ⑨ 이사회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⑩ 본 조에 따라 소집되는 이사회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및 감사가 동영상 및 음성 등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5 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본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 1. 회사의 지점, 사무소의 설치, 폐쇄 및 자회사의 설립
- 2. 회사의 내부규칙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정관변경안의 결정
- 4. 일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5. 회사의 자본증가 및 주주, 금융기관 또는 기타 제 3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6. 이사의 자기거래

사와 각 주주에게 이사회 소집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주주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이사회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각 주주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 ⑨ 이사회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⑩ 본 조에 따라 소집되는 이사회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및 감사가 동영상 및 음성 등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본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 1. 회사의 지점, 사무소의 설치, 폐쇄 및 자회사의 설립
- 2. 회사의 내부규칙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정관변경안의 결정
- 4. 일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5. 회사의 자본증가 및 주주, 금융기관 또는 기타 제 3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6. 이사의 자기거래
- 7. 기타 법령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p>7. 기타 법령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p> <p>제 36 조 (대표이사의 선임 등)</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p> <p>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p> <p>④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 37 조 (이사의 보고의무)</p> <p>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8 조 (감사의 권한과 책무)</p> <p>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시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p> <p>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37 조 (대표이사의 선임 등)</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p> <p>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p> <p>④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 38 조 (이사의 보고의무)</p> <p>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감사의 권한과 책무)</p> <p>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시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 40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p> <p>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계 산</p>
---	---

제 6 장 계 산

제 40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다만, 회사의 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 41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제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시간 및 방법으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 4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다만, 회사의 설립 후 최초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 42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제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시간 및 방법으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독립된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감사하도록 한다.

④ 제 3 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회사의 매 회계연도 말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 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5. 주주배당금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 44 조 (이익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결산결과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고 또 이익 배당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바대로 보통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독립된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감사하도록 한다.

④ 제 3 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회사의 매 회계연도 말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 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5. 주주배당금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 45 조 (이익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결산결과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고 또 이익 배당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바대로 보통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④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

④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최초의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세칙내규)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최초의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세칙내규)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